



국토교통부

## 국 토 교 통 부



수신 (사)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장  
(경유)

제목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및 시행 관련 회신

---

1. (사)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시험 2020-38호(2020.2.20)호의 관련입니다.
2. 법률 제16135호(2018.12.31.)로 일부 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4항에 따르면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에 따라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시행령 제100조의2에 발주자는 건설안전점검기관을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거쳐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하며,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 발주자는 작성·관리 중인 명부에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발주자가 지정하도록 규정한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4항 규정은 법률 제16135호(2018.12.31.)로 일부 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 부칙 제6조에 따라 2019.7.1. 이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될 것입니다.
5.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7호, 2020.1.23.) 제18조에 따라 발주자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 및 지정공고를 하고,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시공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고시의 부칙 제1조에 따라 고시가 발령한 2020.1.23.부터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6. 따라서, 2019.7.1. 이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말한다)한 건설공사는 발주자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7. 다만, 발주자가 모집공고 및 지정공고, 세부평가기준 마련 등의 행정절차로 인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제때 지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지침 외에 발주자별 별도의 절차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



---

주무관                      **장형석**                      시설사무관                      **장은석**                      건설안전과장                      **한명희**                      전결 2020. 2. 28.

협조자

시행    건설안전과-1157                      (2020. 2. 28.)                      접수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어진동) 국토교통부                      / <http://www.molit.go.kr>

전화번호    044-201-3575                      팩스번호    02-2110-0695                      / [jhs0116@molit.go.kr](mailto:jhs0116@molit.go.kr)                      / 비공개(5)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